

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에 따른 동의(안)

1. 제안사유

○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시 지방재정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 허가토록 되어 있으므로,

○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(서구선거관리위원회,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사무실)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2. 무상사용허가 내용

-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,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사용허가가 가능하며,
-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때에는 국가가 그 재산의 유지,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므로,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, 국민투표,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평화통일의 대 국민적 홍보 및 지역주민의 통일문제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사무실은 국가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는바,
-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 허가코자 합니다.

3. 무상사용허가 대상재산

위 치	사용 재산	사용 면적	사용목적	사용기간	사용허가 신청자
농성동 299 서구청부지 내	토지	165m ²	서구선거 관리위원회	2000. 2. 2~ 2003. 2. 1	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
농성동 299 서구청 본관 3층	건물	31.32m ²	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서구 협의회사무실	2000. 2. 2~ 2003. 2. 1	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장

4. 검토의견

- 무상사용 허가코자 동의(안)이 제출된 공유재산은 헌법 제92조에 의거 설치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헌법 제114조에 의거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로써
- 선거관리위원회 법 제2조 제5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 안에 둘 수 있다에 근거하여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'88. 12. 22 토지사용허가를 얻어 165m² 대지에 건물을 신축 사용하고 있으며,

-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의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는 구청본관 3층에 사무실(31.32㎡)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으로
-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국가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어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, 국민투표,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평화통일의 대 국민적 홍보 및 지역주민의 통일문제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사무실은 국가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, 위 공유재산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으로 사용 허가코자한 사항이므로 심사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그리고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,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되며 무상 사용 허가코자 한 위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하므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(사용허가기간)에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추후부터는 사용기간 만료 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처리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.